

# 2023년도 제1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6. 28.(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노정동(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성주, 최진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4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759건(안건번호 제2023-76338호~7805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76338호~76346호(순번 1번~9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76347호(순번 10번)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76348호~76355호(순번 11번~18번)는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영상저작물(방송)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69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14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을 전부 공개함.

####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민영 주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노정동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영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1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3,75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0개 게시물이임.  
 (순번 1번 및 8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PDF 파일을 판매하고 있음. PDF 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자 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앞선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 B 위원: 순번 1번 내지 9번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0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 공유 게시물 총 1건임.

(순번 1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심의일 현재 OSP에 의하여 접근 제한 조치된 상태이므로 채증자료로 대신하겠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직접 번역하고 자막(.smi 파일)을 제작하여 전송하고 있음. 원저작물은 국내에서 방영중이거나 스트리밍 서비스 중으로, 합법 시장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중인 자막파일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것을 전제로 제작되어 있어,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의 이용 및 감상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최신 저작물의 경우 공표 초기에 불법복제 및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합법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2차적저작물성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비교적 강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종합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어문)을 제공중인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심의일 현재 OSP에 의하여 접근 제한 조치된 상태이면, 이는 영구적으로 적용되는지?
  
- 김민영 주임: 그렇지 않음. 블로그, 카페 등의 경우 OSP의 이용약관, 운영정책 등을 위반하는 경우 OSP에 의하여 접근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일반적으로 해당 조치는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지며, 이용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 접근 제한을 해제함. 따라서 불법복제물이 언제든지 다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더불어 접근 제한 조치는 제3자의 접근만 제한할 뿐,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는 이용자는 접근이 가능해지므로 해당 페이지의 불법복제물을 다른 페이지로 옮겨 이용할 수 있음. 따라서 불법복제물이 다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시정권고의 실효성 및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B 위원: 해당 안전에 대해서는 가결 의견임. 다만 권리자가 아닌 일반인의 신고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D 위원: 순번 10번은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 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두 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0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번~18번은 실명 3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및 카페에서 방송물을 각 제공 중이며, 총 58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11번 내지 18번은 각 게시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상저작물(방송)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1번~1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9번~171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3,690 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방송, 영화, 만화, 게임, SW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19번~1719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9번~171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76338호~76346호(순번 1번~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76347호(순번 10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76348호~76355호(순번 11번~1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76356호~78056호(순번 19번~171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이 제1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5.

분과위원장 노정동

위원 김경숙

위원 김성주

위원 최진원